

경제 및 고용 동향

◆ 2014년 10월 생산 전년동월대비 0.1% 증가, 전월 대비로는 0.3% 증가

○ 2014년 10월 생산은 서비스업 등에서 늘고 광공업과 건설업 등에서 감소한 가운데 전년동월대비 0.1% 증가함.

－ 제조업 생산은 1차금속(2.8%), 기계장비(4.4%), 석유정제(5.8%) 등에서 증가하고 반도체 및 부품(-4.1%), 자동차(-10.5%), 영상음향통신(-17.0%) 등에서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3.4% 감소함(전월대비로는 1.8% 감소).

－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7.8%), 보건·사회복지(6.0%), 부동산·임대(8.5%) 등 서비스업 전반에 걸쳐 증가하였으나 도소매(-1.7%),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0.7%)에서는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2.6% 증가함(전월대비 0.8% 증가).

○ 2014년 10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0.3% 감소, 투자는 전년동월대비 8.8% 감소함.

－ 소비재판매액지수는 신발·가방 등 준내구재(4.2%) 등에서 판매가 늘었으나 통신기기 등 내구재(-1.2%), 음료식품 등 비내구재(-0.5%)에서 판매가 줄어 전년동월대비 0.3% 감소함(전월대비 0.4% 감소).

－ 설비투자는 기타운송장비, 일반산업용기계, 특수산업용기계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8.8% 감소함(전월대비 4.6% 감소).

－ 건설기성(불변)은 토목공사 실적이 줄어 전년동월대비 4.7% 감소하였고, 건설수주(경상)는 발전·통

신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신규주택 등에서 수주가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2.2% 증가함.

- 2014년 10월 동행종합지수는 전월과 동일하였고, 선행종합지수는 0.7% 상승함.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내수출하지수와 광공업생산지수 등이 하락하여 전월대비 0.3p 하락함.
 -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3p 상승함.

◆ 2014년 11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1.0% 상승(생활물가지수 0.7% 상승)

- 2014년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83(2010년=100)으로 나타나 전월대비 0.2% 하락하고 전년동월대비로는 1.0% 상승함.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년동월대비 의류·신발(2.2%), 주택·수도·전기·연료(2.2%), 음식·숙박(1.7%), 교육(1.6%), 보건(0.9%) 등에서 상승한 반면, 교통(-1.3%)과 주류·담배(-0.2%) 등에서는 하락함.
 - 2014년 11월 생활물가지수는 107.30을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0.7% 상승함(전월 대비로는 0.2% 하락)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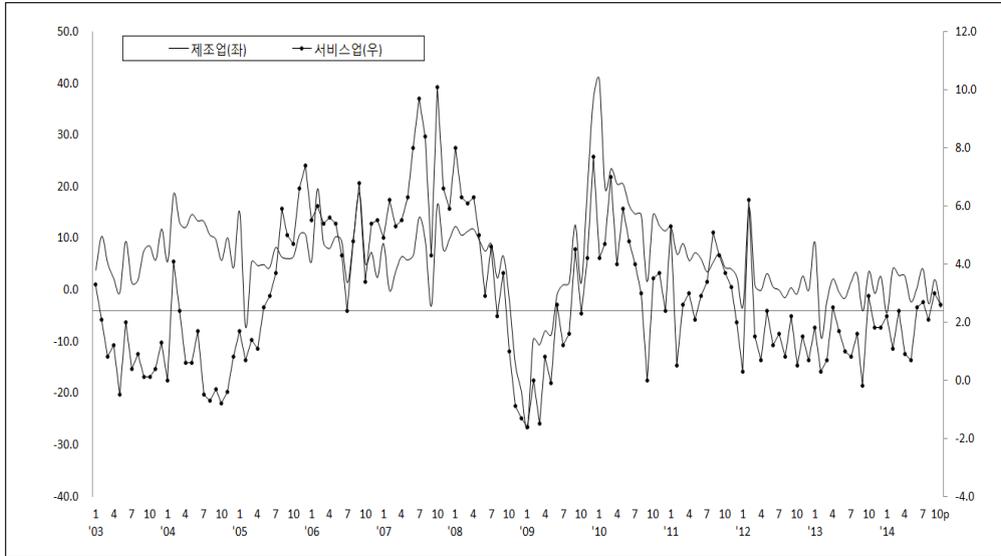
		2011					2012					2013					2014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0월	1/4	2/4	3/4p	10월p
생산	광공업 생산	9.1	6.2	5.4	3.4	6.0	3.9	1.3	-0.3	0.8	1.3	-0.8	0.0	0.2	1.7	0.3	3.6	0.7	0.3	1.1	-3.2
	제조업 생산	9.3	6.3	5.2	3.6	6.0	4.1	1.2	-0.3	0.6	1.4	-0.8	0.0	0.1	1.8	0.3	3.6	0.6	0.2	1.2	-3.4
	출하	10.2	5.5	4.5	2.9	5.8	3.4	1.7	0.5	0.3	1.5	-0.9	0.3	0.1	1.8	0.4	3.5	0.2	-0.2	0.4	-3.4
	내수	7.3	4.0	3.7	1.5	4.1	1.0	-0.7	-1.3	-1.7	-0.7	-3.4	-2.4	-1.3	1.6	-1.1	3.3	1.4	1.4	0.5	-4.5
	수출	14.1	7.5	5.9	4.5	7.8	6.6	4.8	2.6	2.7	4.2	2.1	3.5	1.7	2.2	2.3	3.6	-1.2	-2.1	0.3	-1.9
	서비스업 생산	2.8	2.7	4.2	3.0	3.2	2.6	1.5	1.6	0.8	1.6	0.9	1.7	0.8	2.1	1.4	2.9	1.9	1.4	2.5	2.6
소비	소비재 판매	5.2	6.3	4.0	2.6	4.5	2.8	1.4	2.7	2.5	2.4	0.3	1.2	0.7	1.2	0.8	2.0	2.5	0.7	1.4	-0.3
투자	설비투자	5.2	7.4	3.2	-1.4	3.5	8.2	-4.2	-7.9	-6.4	-2.8	-13.1	-4.0	2.7	10.4	-1.3	15.2	5.9	6.2	1.4	-8.8
물가		3.8	4.0	4.3	4.0	4.0	3.0	2.4	1.6	1.7	2.2	1.6	1.2	1.4	1.1	1.3	0.9	1.2	1.6	1.4	1.0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2007. 12. 28)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을 포괄하며, 이 중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산업에서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제외함.
 3) 물가상승률은 2014년 11월 기준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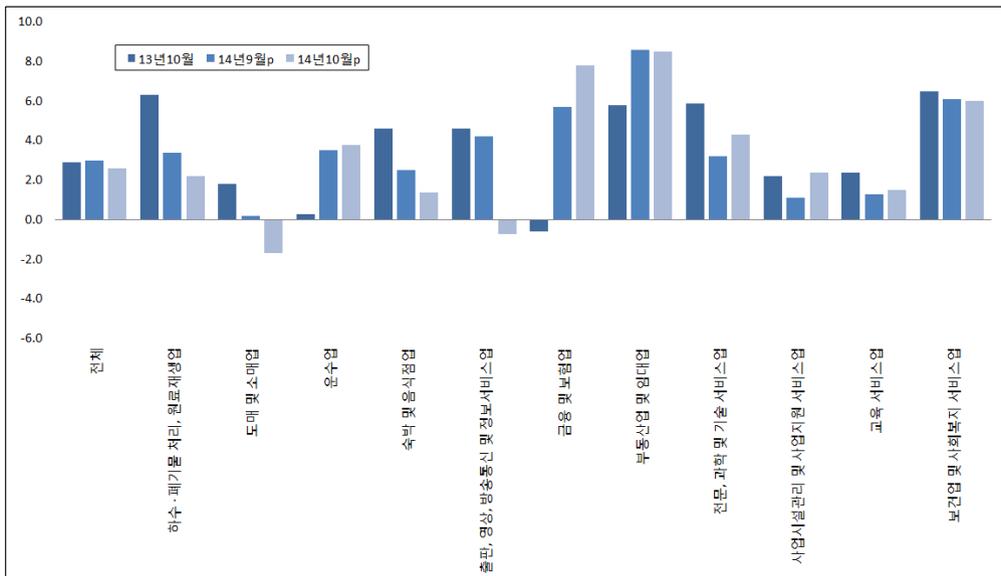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8, 9월 수치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2014.10), 『2014년 9월 산업활동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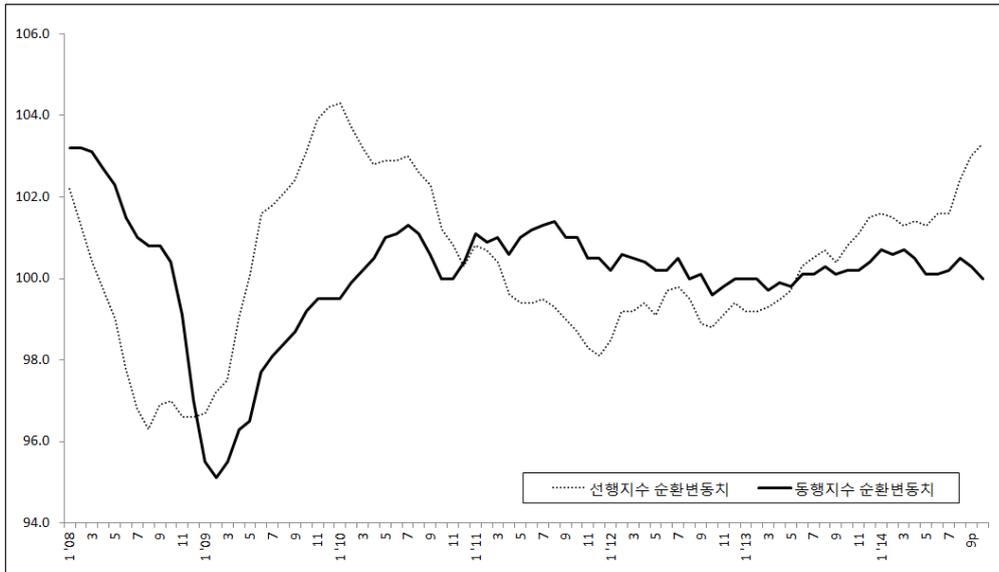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 추이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3]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2010=100)



주: p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KOSIS.

(정현상, 동향분석팀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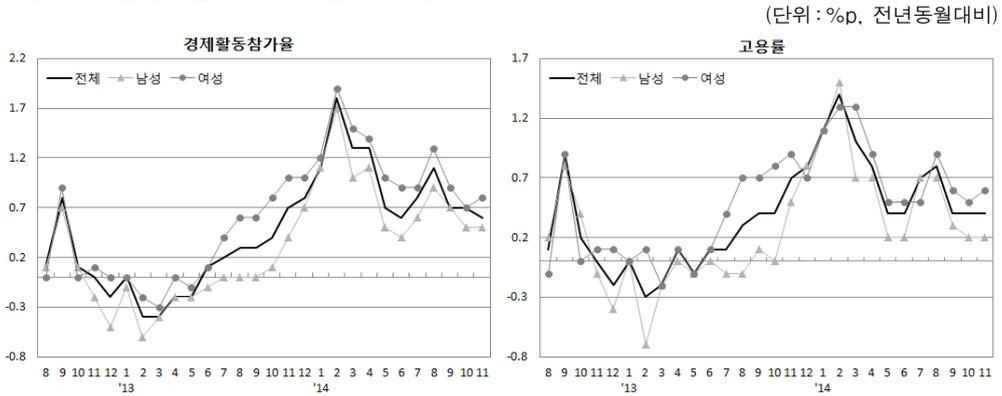
◆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및 취업자 증가폭 유지**

- 2014년 11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26,78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56천 명(2.1%) 증가함.
 -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5,489천 명으로 258천 명(1.7%) 증가하였고, 여성은 11,297천 명으로 298천 명(2.7%) 증가하였음.
- 2014년 11월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62.7%로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함.
 - 성별로 보면, 남성(74.2%)과 여성(51.8%)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0.5%p, 0.8%p 상승하였음(그림 4 좌측 참조).
- 2014년 11월 중 고용률은 60.8%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함.
 - 남성의 고용률은 71.8%로 전년동월대비 0.2%p, 여성의 고용률은 50.3%로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하였음(그림 4 우측 참조).
- 2014년 11월 중 취업자는 25,96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39천 명(1.7%)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4,99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0천 명(1.4%) 증가하

였고, 여성 취업자는 10,96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38천 명(2.2%) 증가하였음 (그림 5 참조).

- 2014년 11월 중 실업자는 81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8천 명(16.8%) 증가, 실업률은 3.1%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함.
 - 남성 실업자는 490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8천 명(13.5%) 증가하였고, 여성 실업자는 32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0천 명(22.3%) 증가하였음.
 - 실업률은 남성이 3.2%로 전년동월대비 0.4%p 증가하였고, 여성은 2.9%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그림 4] 성별 참가율(좌)과 고용률(우) 증감 추이



자료: 통계청, KOSIS.

[표 2] 최근의 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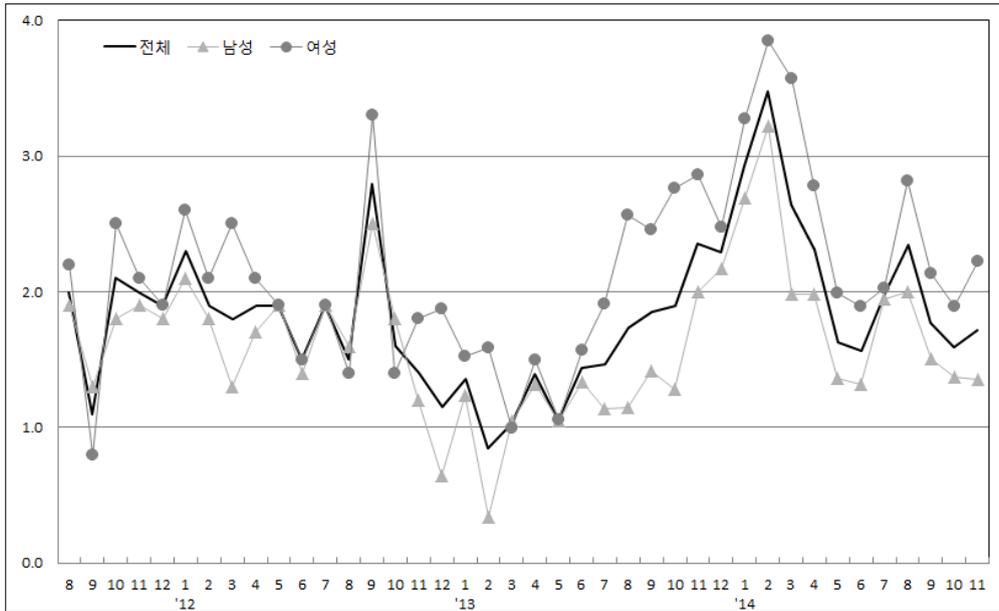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3					2014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1월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0월	11월
경제활동인구	25,091 (0.9)	26,138 (1.1)	26,187 (1.7)	26,078 (2.2)	26,230 (2.3)	25,945 (3.4)	26,767 (2.4)	26,810 (2.4)	26,809 (2.1)	26,786 (2.1)
참가율	59.9	62.2	62.1	61.7	62.1	61.3	63.1	63.0	62.9	62.7
취업자	24,184 (1.1)	25,326 (1.3)	25,410 (1.7)	25,346 (2.2)	25,530 (2.4)	24,913 (3.0)	25,790 (1.8)	25,927 (2.0)	25,951 (1.6)	25,968 (1.7)
고용률	57.7	60.2	60.3	60.0	60.4	58.8	60.8	60.9	60.9	60.8
실업자	907	812	777	733	700	1,031	977	884	858	818
실업률	3.6	3.1	3.0	2.8	2.7	4.0	3.7	3.3	3.2	3.1
비경제활동인구	16,831 (2.0)	15,911 (1.5)	15,982 (0.5)	16,167 (-0.6)	16,016 (-0.7)	16,397 (-2.6)	15,685 (-1.4)	15,760 (-1.4)	15,837 (-0.7)	15,902 (-0.7)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100.
 자료: 통계청(2014. 12), 『2014년 11월 고용동향』.

[그림 5] 성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2014년 11월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5,90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4천 명(-0.7%) 감소함.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39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1천 명(-0.6%) 감소하였고,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0,50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2천 명(-0.8%) 감소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42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74천 명 증가함.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쉬었음'은 1,40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7천 명(-4.6%) 감소하였고, 정규교육기관 재학,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을 포함하는 '재학·수강'은 4,287천 명으로 59천 명(-1.4%) 감소하였음.

◆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증가 지속

○ 2014년 11월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제조업(102천 명, 2.4%), 건설업(84천 명, 4.7%),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69천 명, 1.9%),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212천 명, 3.7%)에서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85천 명, -5.3%)과 전기·운수·통신·금융업(-38천 명, -1.2%)에서 감소함.

〈표 3〉 산업별 취업자

(단위 : 천 명, %,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2013					2014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1월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0월	11월
전 산업	23,927 (2.0)	25,003 (1.8)	24,989 (2.1)	25,346 (2.2)	25,530 (2.4)	24,913 (3.0)	25,790 (1.8)	25,927 (2.0)	25,951 (1.6)	25,968 (1.7)
농림어업	1,176 (-2.6)	1,713 (-1.4)	1,706 (0.1)	1,504 (-1.0)	1,591 (-1.9)	1,179 (1.0)	1,631 (-3.2)	1,603 (-7.0)	1,607 (-8.3)	1,506 (-5.3)
제조업	4,037 (-2.5)	4,061 (-1.6)	4,126 (2.1)	4,245 (1.2)	4,253 (0.8)	4,279 (3.0)	4,319 (3.3)	4,346 (4.7)	4,361 (3.4)	4,355 (2.4)
건설업	1,721 (4.8)	1,807 (1.9)	1,772 (0.9)	1,783 (-0.5)	1,790 (-1.0)	1,683 (1.6)	1,813 (0.6)	1,833 (3.2)	1,851 (2.6)	1,874 (4.7)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571 (1.8)	5,596 (2.6)	5,610 (2.1)	5,751 (2.6)	5,769 (2.6)	5,837 (5.5)	5,798 (3.8)	5,930 (4.9)	5,960 (4.9)	5,981 (3.7)
사업·개인·공공 서비스업 및 기타	8,398 (3.7)	8,820 (3.4)	8,772 (3.5)	8,994 (3.6)	9,054 (4.5)	8,865 (2.4)	9,147 (1.9)	9,176 (2.1)	9,161 (1.4)	9,223 (1.9)
전기·운수·통신 및 금융업	3,011 (4.5)	2,991 (2.0)	2,990 (-0.4)	3,054 (1.9)	3,058 (2.2)	3,055 (1.9)	3,067 (-0.5)	3,026 (-2.5)	3,001 (-1.2)	3,020 (-1.2)

주: 1)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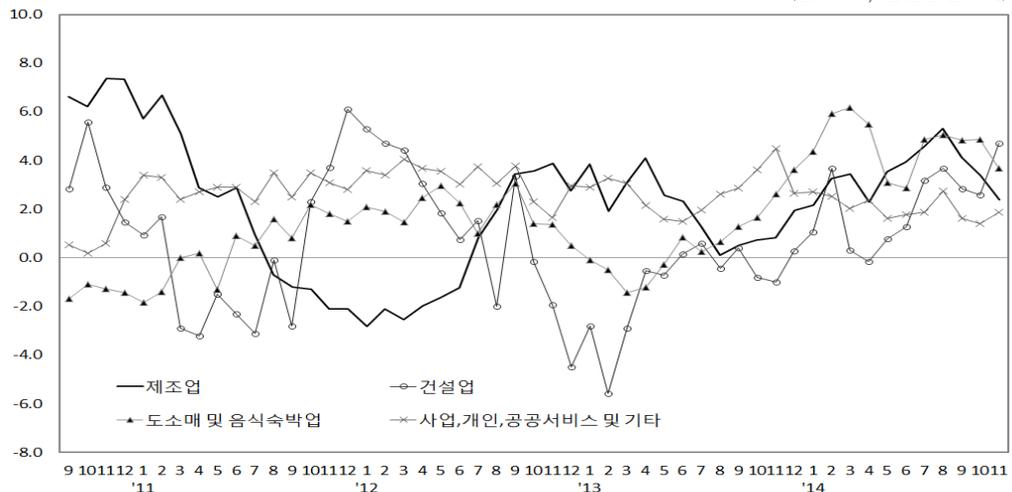
2) 2009년부터 9차 개정 산업분류를 적용.

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부동산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 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자료: 통계청(2014. 12), 『2014년 11월 고용동향』.

〈그림 6〉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상용·임시근로자 증가 지속, 일용근로자 증가로 전환

- 2014년 11월 중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는 6,88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1천 명(-1.0%) 감소, 임금근로자는 19,08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09천 명(2.7%) 증가함.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2,295천 명으로 333천 명(2.8%), 임시근로자는 5,119천 명으로 146천 명(2.9%) 증가였고, 2014년 3월 이후 계속해서 감소해 오던 일용근로자는 1,667천 명으로 31천 명(1.9%) 증가하였음.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고용주 포함)는 5,676천 명으로 9천 명(0.2%) 증가하였고, 무급가족종사자는 전년동월대비 79천 명(-6.1%) 감소하였음.
- 2014년 11월 중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63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24천 명(6.6%) 증가,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2,020천 명으로 219천 명(1.0%) 증가함.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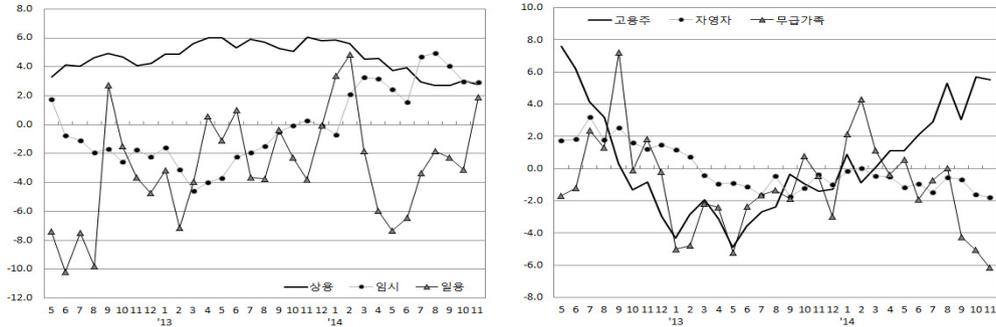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3					2014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1월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0월	11월
전 체	24,184 (1.1)	25,326 (1.3)	25,410 (1.7)	25,346 (2.2)	25,530 (2.4)	24,913 (3.0)	25,790 (1.8)	25,927 (2.0)	25,951 (1.6)	25,968 (1.7)
비임금근로자	6,578 (-1.1)	7,006 (-2.1)	7,049 (-1.5)	6,854 (-0.9)	6,958 (-0.6)	6,597 (0.3)	6,984 (-0.3)	7,047 (0.0)	7,005 (-0.7)	6,887 (-1.0)
자영업주	5,520 (-0.5)	5,726 (-1.8)	5,740 (-1.4)	5,618 (-0.9)	5,667 (-0.6)	5,512 (-0.1)	5,712 (-0.2)	5,760 (0.3)	5,730 (0.3)	5,676 (0.2)
무급가족종사자	1,059 (-3.9)	1,280 (-3.4)	1,309 (-1.6)	1,236 (-0.8)	1,290 (-0.5)	1,085 (2.5)	1,272 (-0.6)	1,287 (-1.7)	1,275 (-5.1)	1,211 (-6.1)
임금근로자	17,606 (1.9)	18,320 (2.6)	18,361 (2.9)	18,492 (3.4)	18,572 (3.5)	18,316 (4.0)	18,806 (2.6)	18,880 (2.8)	18,945 (2.5)	19,081 (2.7)
상용근로자	11,379 (5.1)	11,697 (5.8)	11,848 (5.6)	11,925 (5.6)	11,962 (6.0)	11,985 (5.3)	12,175 (4.1)	12,181 (2.8)	12,236 (3.0)	12,295 (2.8)
임시근로자	4,762 (-3.1)	4,945 (-3.3)	4,928 (-1.3)	4,935 (0.0)	4,973 (0.3)	4,835 (1.5)	5,063 (2.4)	5,153 (4.6)	5,108 (3.0)	5,119 (2.9)
일용근로자	1,465 (-4.8)	1,678 (0.2)	1,585 (-2.6)	1,631 (-2.1)	1,636 (-3.8)	1,496 (2.1)	1,567 (-6.6)	1,546 (-2.5)	1,602 (-3.1)	1,667 (1.9)
36시간 미만	5,563 (67.9)	4,821 (46.8)	5,083 (7.6)	3,395 (5.5)	3,414 (6.9)	3,593 (-35.4)	3,397 (-29.5)	5,229 (2.9)	3,498 (7.4)	3,638 (6.6)
36시간 이상	18,099 (-9.9)	20,217 (-5.6)	19,810 (0.2)	21,636 (1.7)	21,801 (1.7)	20,829 (15.1)	22,090 (9.3)	20,184 (1.9)	22,115 (0.5)	22,020 (1.0)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2014. 12), 『2014년 11월 고용동향』.

[그림 7] 임금근로자(좌) 및 비임금근로자(우)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고용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이고 자영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임.
 자료: 통계청, KOSIS.

◆ 전 연령별 · 전 교육수준별 실업률 상승

- 2014년 11월 중 연령별 실업률은 50~59세(2.2%, 0.7%p), 40~49세(2.2%, 0.6%p), 15~29세(7.9%, 0.4%p) 순으로 소폭 상승하였고 60세 이상(1.2%, 0.0%p)과 30~39세(2.6%, 0.0%p)는 변화가 거의 없음.

<표 5> 연령별 · 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 천 명, %,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2013					2014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1월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0월	11월
전 체	907 (3.6)	812 (3.1)	777 (3.0)	733 (2.8)	700 (2.7)	1,031 (4.0)	977 (3.7)	844 (3.3)	858 (3.2)	818 (3.1)
15~29세	343 (8.4)	325 (7.9)	328 (7.9)	328 (7.9)	309 (7.5)	419 (9.8)	399 (9.4)	371 (8.6)	336 (8.0)	332 (7.9)
30~39세	195 (3.3)	180 (3.0)	170 (2.9)	155 (2.6)	154 (2.6)	187 (3.2)	202 (3.4)	181 (3.0)	179 (3.0)	155 (2.6)
40~49세	143 (2.1)	146 (2.1)	131 (1.9)	114 (1.7)	108 (1.6)	155 (2.3)	167 (2.4)	145 (2.1)	139 (2.0)	150 (2.2)
50~59세	127 (2.3)	106 (1.8)	106 (1.8)	88 (1.5)	87 (1.5)	130 (2.2)	140 (2.3)	129 (2.1)	138 (2.3)	134 (2.2)
60세 이상	99 (3.4)	56 (1.6)	42 (1.2)	48 (1.4)	42 (1.2)	140 (4.4)	69 (1.9)	58 (1.5)	67 (1.8)	47 (1.2)
중졸 이하	148 (3.3)	101 (2.0)	86 (1.8)	84 (1.8)	73 (1.5)	173 (3.9)	108 (2.3)	95 (2.0)	97 (2.1)	83 (1.8)
고졸	367 (3.7)	341 (3.3)	345 (3.4)	335 (3.3)	316 (3.1)	443 (4.3)	427 (4.1)	414 (3.9)	377 (3.5)	367 (3.5)
대졸 이상	392 (3.7)	370 (3.4)	346 (3.1)	313 (2.8)	311 (2.8)	416 (3.7)	442 (3.8)	375 (3.3)	384 (3.4)	369 (3.2)
취업무경험 실업자	61	48	54	49	49	83	61	56	48	53
취업유경험 실업자	845	764	723	684	652	948	916	827	810	765

주: ()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통계청(2014. 12), 『2014년 11월 고용동향』.

- 교육정도별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중졸 이하(1.8%, 0.3%p), 고졸(3.5%, 0.4%p), 대졸 이상(3.2%, 0.4%p) 전 교육수준에서 증가하였음.
- 2014년 11월 중 전체 실업자 818천 명을 과거 취업경험 유무로 살펴보면, 취업무경험 실업자는 5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천 명 증가, 취업유경험 실업자는 765천 명으로 114천 명 증가함.

(정현상, 동향분석팀 연구원)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2014년 9월 명목임금상승률 전년동월대비 2.0% 하락

- 2014년 9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333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0% 하락함.
 - 2014년 9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정액급여(3.1%)와 초과급여(10.1%)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정액급여 상승폭의 둔화와 특별급여(-21.4%)의 하락으로 전년동월대비 2.4% 하락함.
 - ※ 초과급여 :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 특별급여 :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전년동월대비 1.7% 하락한 1,339천 원을 기록함.
- 2014년 1~9월 평균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169천 원으로 전년동평균(3,105천 원)대비 2.1% 상승함.
 - 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전년 동평균 대비 2.1% 상승한 3,356천 원을 기록함.
 -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3.2%)와 초과급여(9.3%)는 전년 동평균 대비 상승한 반면 특별급여는 5.7% 하락함.
 -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전년 동평균 대비 0.5% 상승한 1,384천 원을 기록함.
- 2014년 9월 실질임금은 3.1% 하락함.
 - 2014년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2010=100.0)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3.1% 하락함.

〈표 6〉 임금관련 주요지표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천 원, %, 2010=100.0)

	2011	2012	2013	2014				
				1~9월 평균	9월	1~9월 평균	9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2,844 (1.0)	2,995 (5.3)	3,111 (3.9)	3,105 (4.1)	3,402 (2.9)	3,169 (2.1)	3,333 (-2.0)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3,019 (-0.9)	3,178 (5.3)	3,299 (3.8)	3,288 (4.0)	3,625 (2.5)	3,556 (-2.4)	
	정액급여	2,341 (4.8)	2,470 (5.5)	2,578 (4.4)	2,566 (4.5)	2,580 (4.1)	2,648 (3.2)	2,660 (3.1)
	초과급여	179 (-8.4)	181 (1.0)	184 (1.7)	182 (1.0)	180 (1.9)	199 (9.3)	199 (10.1)
	특별급여	498 (-19.3)	527 (5.8)	537 (1.8)	540 (2.4)	864 (-1.7)	509 (-5.7)	679 (-21.4)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1,215 (15.1)	1,293 (6.4)	1,377 (6.5)	1,377 (7.6)	1,362 (9.2)	1,384 (0.5)	1,339 (-1.7)	
소비자물가지수	104 (4.0)	106 (2.2)	108 (1.2)	107.6 (1.4)	108.1 (1.0)	109.2 (1.4)	109.4 (1.1)	
실질임금증가율	-2.9	3.1	2.6	2.7	1.9	0.6	-3.1	

주 : 1)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2) 1~9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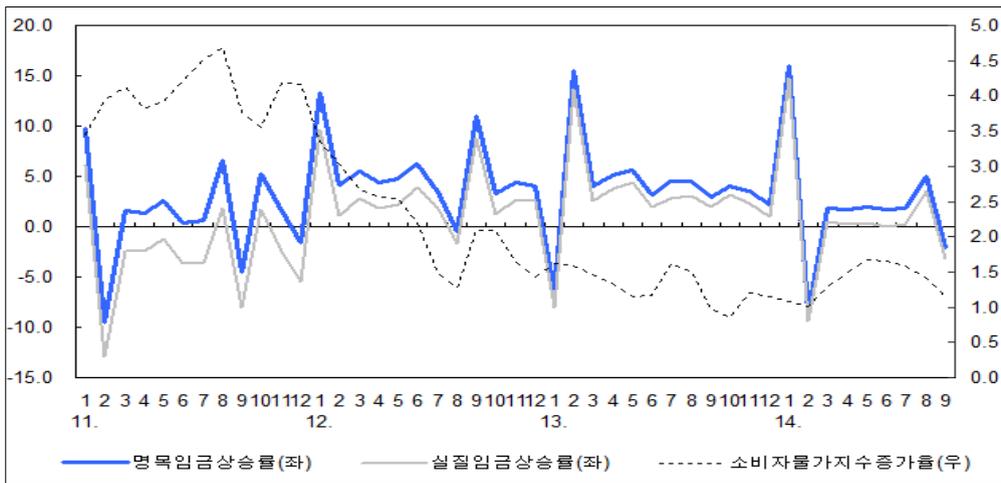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2014년 8월까지 실질임금상승률은 6개월 연속 0%대였으나 9월 현재 마이너스를 기록함(그림 8 참조).

- 2014년 1~9월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감안한 2014년 1~9월 평균 실질임금 증가율은 0.6% 상승하였으며, 이는 명목임금상승률의 둔화폭이 컸던 것에 기인함.

〔그림 8〕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 %, 2010=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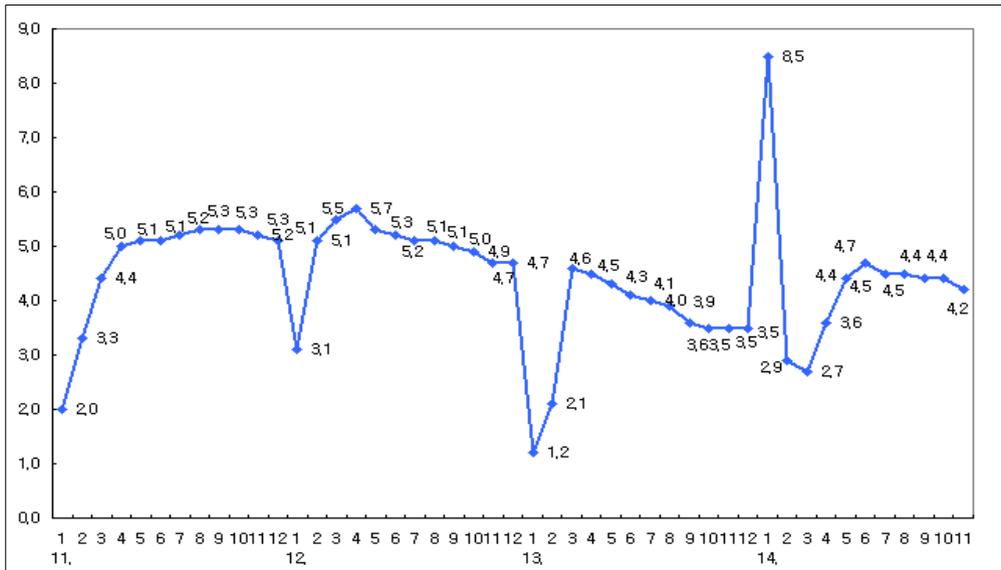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4년 11월 협약임금 인상률 4.2%

- 2014년 11월 임금총액 기준 협약임금 인상률은 4.2%로 2013년 11월 인상률(3.5%)에 비해 0.7%p 상승함.
- 2014년 11월 임금결정 진도율은 79.7%로 전년동월과 같은 수준임.

[그림 9] 협약임금 인상률 추이

(단위: %)



주: 1) 협약임금 인상률이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로서 초과급여, 특별상여금 등 변동성 급여는 제외됨.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의 상승률과는 다름.
 2) 월별 협약임금 인상률은 당월분이 아니라 당월까지 누계분 인상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e-나라지표」, www.index.go.kr

◆ 2014년 9월 대부분 산업에서 임금 하락

- 2014년 9월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산업에서 임금이 하락함.
- 2014년 9월 임금이 상승한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4.6%), 부동산업 및 임대업(3.1%), 교육서비스업(1.9%), 건설업(1.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0.4)으로 나타남.
- 반면 임금 하락폭이 큰 산업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9%), 도매 및 소매업(-5.8%), 광업(-5.1%),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3.3%), 협회·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3.1%) 등으로 나타남.

〈표 7〉 산업별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 %)

	2012	2013	2014			
			1~9월		1~9월	
			평균	9월	평균	9월
전 산업	2,995 (5.3)	3,111 (3.9)	3,105 (4.1)	3,402 (2.9)	3,169 (2.1)	3,333 (-2.0)
광업	3,470 (4.9)	3,557 (2.5)	3,622 (2.5)	3,970 (1.2)	3,509 (-3.1)	3,767 (-5.1)
제조업	3,221 (6.1)	3,371 (4.7)	3,355 (4.8)	3,696 (1.3)	3,478 (3.7)	3,638 (-1.6)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388 (-1.7)	5,542 (2.9)	5,408 (2.6)	7,257 (-1.4)	5,491 (1.5)	7,016 (-3.3)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2,654 (6.7)	2,743 (3.3)	2,717 (4.0)	2,987 (1.5)	2,790 (2.7)	2,976 (-0.4)
건설업	2,273 (4.2)	2,414 (6.2)	2,422 (6.7)	2,551 (5.7)	2,482 (2.5)	2,579 (1.1)
도매 및 소매업	3,122 (6.1)	3,168 (1.5)	3,150 (2.0)	3,524 (-0.4)	3,172 (0.7)	3,321 (-5.8)
운수업	2,589 (8.2)	2,732 (5.5)	2,710 (5.5)	2,927 (5.0)	2,757 (1.7)	2,907 (-0.7)
숙박 및 음식점업	1,738 (5.2)	1,772 (1.9)	1,760 (1.1)	1,985 (7.4)	1,768 (0.5)	1,969 (-0.8)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3,851 (4.3)	3,936 (2.2)	3,959 (2.8)	4,133 (0.5)	3,895 (-1.6)	4,092 (-1.0)
금융 및 보험업	4,988 (4.6)	5,058 (1.4)	5,089 (1.9)	5,387 (2.9)	5,201 (2.2)	5,633 (4.6)
부동산업 및 임대업	2,194 (8.8)	2,269 (3.4)	2,244 (2.7)	2,287 (3.9)	2,301 (2.5)	2,359 (3.1)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112 (6.3)	4,243 (3.2)	4,192 (3.5)	4,948 (3.7)	4,352 (3.8)	4,559 (-7.9)
사업서비스업	1,789 (5.3)	1,883 (5.2)	1,874 (5.7)	1,962 (3.7)	1,904 (1.6)	1,951 (-0.6)
교육서비스업	3,123 (4.6)	3,261 (4.4)	3,365 (5.5)	3,493 (5.3)	3,443 (2.3)	3,560 (1.9)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608 (4.7)	2,662 (2.0)	2,669 (2.6)	2,890 (3.9)	2,673 (0.2)	2,900 (0.4)
여가관련 서비스업	2,211 (3.8)	2,326 (5.2)	2,312 (6.0)	2,480 (3.7)	2,384 (3.1)	2,460 (-0.8)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228 (2.0)	2,226 (-0.1)	2,228 (0.3)	2,373 (-2.4)	2,223 (-0.2)	2,300 (-3.1)

주: 1) 전체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총액.
 2)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3) 9차 산업분류 기준.
 4) 1~9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4년 1~9월 평균 임금은 대부분 산업에서 상승함.
 - 2014년 1~9월 평균 임금이 하락한 산업은 광업(-3.1%),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1.6%), 협회·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0.2%)으로 나타남.
 - 이외 대부분 산업에서 전년 동평균 대비 임금이 상승함. 임금 상승이 두드러진 산업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3.8%), 제조업(3.7%), 여가관련 서비스업(3.1%) 등으로 나타남.

◆ 2014년 9월 중소·대규모 사업체 모두에서 상용근로자 임금 하락

- 2014년 9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중소·대규모 사업체에서 모두 하락하였고, 대규모 사업체에서의 임금 하락폭이 큼.

- 2014년 9월 기준 상용근로자 5~299인 규모의 상용임금총액은 3.158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0.5% 하락하였고, 이는 특별급여(-16.4%)의 감소와 정액급여(2.7%)의 상승폭 둔화에 기인함.
-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상용임금총액은 초과급여(21.1%)의 상승과 정액급여(6.9%)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특별급여(-20.7%)의 하락으로 전년동월대비 2.3% 하락함.

〈표 8〉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비상용근로자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 %)

		2012	2013	2014			
				1~9월 평균	9월	1~9월 평균	9월
전 규모 (5인 이상)	상용임금총액	3,178(5.3)	3,299(3.8)	3,288(2.5)	3,625(4.0)	3,356(2.1)	3,538 (-2.4)
	정액급여	2,470(5.5)	2,578(4.4)	2,566(4.1)	2,580(4.5)	2,648(3.2)	2,660 (3.1)
	초과급여	181(1.0)	184(1.7)	182(1.9)	180(1.0)	199(9.3)	199 (10.1)
	특별급여	527(5.8)	537(1.8)	540(-1.7)	864(2.4)	509(-5.7)	679(-21.4)
	비상용임금총액	1,293(6.4)	1,377(6.5)	1,377(9.2)	1,362(7.6)	1,384(0.5)	1,339 (-1.7)
5~299인	상용임금총액	2,834(5.9)	2,938(3.7)	2,928(3.4)	3,173(3.9)	2,987(2.0)	3,158 (-0.5)
	정액급여	2,333(5.9)	2,433(4.3)	2,423(4.2)	2,438(4.4)	2,493(2.9)	2,505 (2.7)
	초과급여	156(3.5)	160(3.0)	159(4.2)	158(3.0)	170(7.1)	170 (8.0)
	특별급여	345(7.7)	345(-0.3)	345(0.0)	577(0.6)	324(-6.2)	482(-16.4)
	비상용임금총액	1,301(7.0)	1,392(7.0)	1,391(9.2)	1,379(8.1)	1,385(-0.4)	1,345 (-2.5)
300인 이상	상용임금총액	4,424(3.5)	4,583(3.6)	4,572(0.0)	5,239(3.7)	4,772(4.4)	5,116 (-2.3)
	정액급여	2,965(4.3)	3,093(4.3)	3,075(3.5)	3,088(4.6)	3,245(5.5)	3,302 (6.9)
	초과급여	275(-3.9)	270(-1.6)	262(-3.5)	261(-3.6)	307(17.1)	316 (21.1)
	특별급여	1,185(3.4)	1,220(3.0)	1,235(-4.6)	1,890(3.2)	1,220(-1.2)	1,499(-20.7)
	비상용임금총액	1,209(0.1)	1,219(0.8)	1,230(7.0)	1,204(1.5)	1,367(11.1)	1,284 (6.7)

주: 1)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2) 1~9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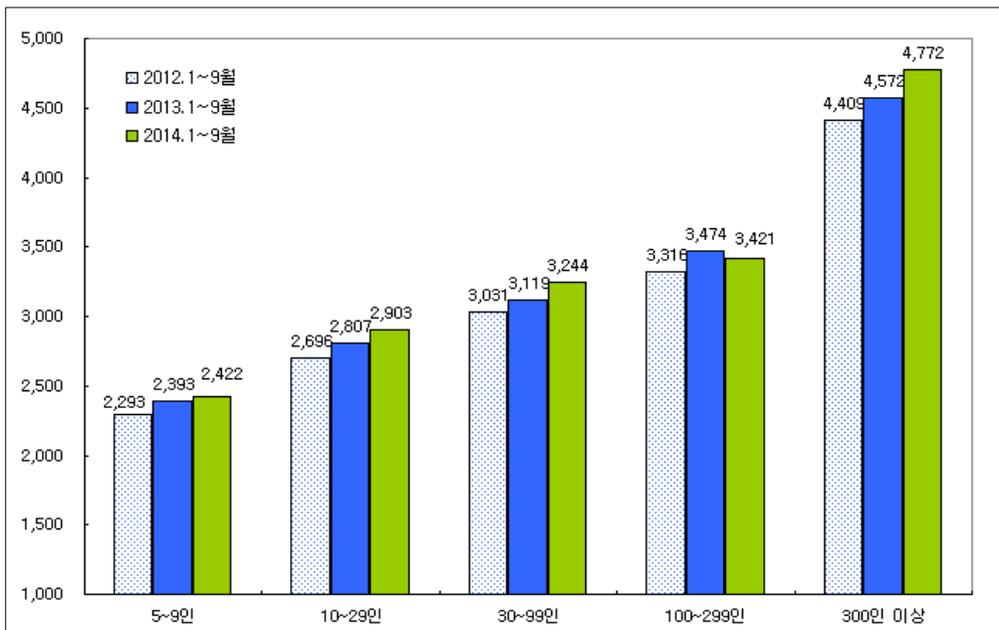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4년 9월 비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대규모 사업체에서 상승한 반면 중소기업에서는 하락함.
 - 2014년 9월 기준 300인 이상 규모의 비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전년동월대비 6.7% 상승한 1,284천 원인 반면, 5~299인 규모의 임금총액은 2.5% 하락한 1,345천 원을 기록함.

- 2014년 1~9월 평균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중소기업에서 증가함.
 - 상용근로자 5~299인 규모의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2,987천 원으로 전년 동평균 대비 2.0% 상승에 불과함. 이는 초과급여(7.1%)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특별급여(-6.2%)의 하락과 정액급여(2.9%)의 상승폭 둔화에서 비롯됨.
 - 300인 이상 규모의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4,772천 원으로 전년 동평균 대비 4.4% 상승하였고, 이는 정액급여(5.5%)와 초과급여(17.1%)의 상승에 기인함.
 - 한편 비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중소기업에서는 전년 동평균 대비 0.4% 하락한 반면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11.1% 상승함.

[그림 10] 상용근로자 사업체규모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

(단위: 천 원)



주: 1~9월 누적평균값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4년 9월 근로시간은 근로일수 증가(18일→19일)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4.5% 증가

- 2014년 9월 근로시간은 162.2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4.5% 증가함.
 - 2014년 9월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162.2시간)은 전년동월(155.2시간)에 비해 7.0시간 증가함(표 9 참조).
 - ※ 월력상 근로일수(18일→19일) 증가.

- 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167.7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5.1% 증가하였고, 비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108.6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5.4% 감소함.
- 2014년 1~9월 평균 근로시간은 전년 동평균 대비 0.9% 감소함.
 - 2014년 1~9월 평균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70.3시간으로 전년 동평균(171.8시간)에 비해 1.5시간 감소함.
 - 2014년 1~9월 평균 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초과근로시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평균 대비 0.6% 감소한 175.8시간을 기록함. 한편 비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전년 동평균 대비 4.8% 감소한 117.2시간을 기록함.

〈표 9〉 내역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

(단위: 시간, %)

	2012	2013	2014			
			1~9월 평균		9월	
			1~9월 평균	9월	1~9월 평균	9월
전체근로시간	174.3(-1.1)	172.6(-1.0)	171.8(-1.5)	155.2(-8.1)	170.3(-0.9)	162.2(4.5)
상용총근로시간	179.9(-1.2)	178.1(-1.0)	176.9(-1.7)	159.6(-8.6)	175.8(-0.6)	167.7(5.1)
상용소정실근로시간	167.2(-0.8)	165.6(-1.0)	164.6(-1.6)	147.5(-9.3)	162.9(-1.0)	155.5(5.4)
상용초과근로시간	12.8(-5.9)	12.5(-2.3)	12.3(-3.9)	12.1(0.8)	12.9(4.9)	12.2(0.8)
비상용근로시간	122.3(-0.2)	122.5(0.2)	123.1(1.3)	114.8(-1.7)	117.2(-4.8)	108.6(-5.4)

주: 1) 전체 임금근로자 근로시간.
 2)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3) 1~9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4년 9월 근로시간은 근로일수의 증가로 대부분 산업에서 증가

- 2014년 9월 근로시간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2.9%)과 협회·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0.7%)을 제외한 산업에서 증가함.
 - 2013년 9월 근로시간이 크게 증가한 산업은 교육서비스업(7.4%), 금융 및 보험업(7.1%), 광업(5.9%), 사업서비스업(5.7%) 등으로 나타남.
- 2014년 1~9월 평균 근로시간은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산업에서 감소함.
 - 2014년 1~9월 교육서비스업(1.2%), 여가관련서비스업(0.6%), 금융 및 보험업(0.6%), 제조업(0.5%)을 제외한 대부분 산업에서 전년 동평균 대비 근로시간이 감소함.

〈표 10〉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시간, %)

	2012	2013	2014			
			1~9월 평균		9월	
			1~9월 평균	9월	1~9월 평균	9월
전 산업	174.3(-1.1)	172.6(-1.0)	171.8(-1.5)	155.2(-8.1)	170.3(-0.9)	162.2(4.5)
광업	185.3(-0.9)	180.6(-2.5)	179.1(-3.7)	159.8(-11.9)	178.1(-0.6)	169.3(5.9)
제조업	186.4(-2.2)	185.0(-0.8)	183.3(-1.6)	165.6(-8.7)	184.2(0.5)	174.2(5.2)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75.5(-0.9)	173.4(-1.2)	174.0(-0.9)	163.3(-3.5)	169.2(-2.8)	158.5(-2.9)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184.8(-0.8)	182.0(-1.5)	181.5(-1.8)	164.3(-8.1)	177.0(-2.5)	169.5(3.2)
건설업	152.5(-0.9)	152.7(0.1)	152.6(0.8)	138.3(-5.3)	147.8(-3.1)	139.9(1.2)
도매 및 소매업	174.5(-0.3)	173.4(-0.6)	172.4(-1.1)	154.8(-8.9)	171.1(-0.8)	163.2(5.4)
운수업	181.7(0.1)	177.8(-2.1)	177.1(-2.6)	164.1(-6.9)	172.1(-2.8)	167.2(1.9)
숙박 및 음식점업	186.6(0.2)	177.3(-5.0)	175.7(-6.4)	166.2(-7.9)	173.7(-1.1)	175.0(5.3)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163.9(-0.4)	163.0(-0.5)	162.2(-1.2)	144.8(-8.9)	161.3(-0.6)	152.8(5.5)
금융 및 보험업	163.4(-0.1)	162.7(-0.4)	161.6(-1.2)	142.6(-10.0)	162.5(0.6)	152.7(7.1)
부동산업 및 임대업	193.4(-0.4)	191.5(-1.0)	191.2(-1.5)	176.3(-5.7)	188.7(-1.3)	183.0(3.8)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5.3(-0.5)	163.9(-0.8)	162.8(-1.6)	146.8(-8.2)	161.9(-0.6)	154.0(4.9)
사업서비스업	173.1(0.6)	172.3(-0.5)	171.3(-1.2)	155.4(-7.7)	170.8(-0.3)	164.2(5.7)
교육서비스업	151.1(-1.2)	150.6(-0.3)	149.9(-1.4)	130.9(-9.9)	151.7(1.2)	140.6(7.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74.8(0.7)	172.0(-1.6)	171.7(-1.8)	154.6(-9.0)	168.3(-2.0)	161.8(4.7)
여가관련서비스업	158.1(0.6)	158.0(-0.1)	157.0(-0.5)	144.7(-7.1)	158.0(0.6)	150.9(4.3)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68.9(-2.7)	167.5(-0.8)	167.7(-1.1)	152.4(-7.3)	162.1(-3.3)	151.4(-0.7)

주: 1) 전체 임금근로자 기준.
 2)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3) 9차 산업분류 기준.
 4) 1~9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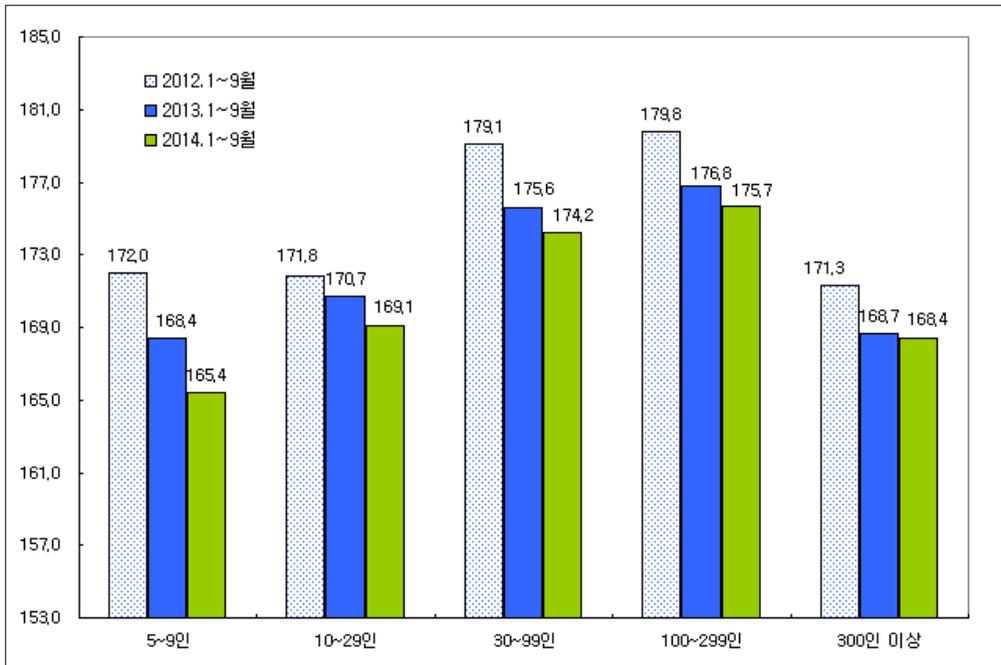
◆ 2014년 9월 근로시간은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모두 증가

○ 2014년 9월 평균 근로시간은 중소기업에서 감소폭이 더 큼.

- 5~299인 중소기업에서 전체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4.8% 증가한 163.1시간,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전년동월대비 3.2% 증가한 158.1시간을 기록함.
- 세부 규모별로 보면, 5~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59.2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4.5%, 10~2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61.0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5.0%, 30~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65.9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4.3%, 100~2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67.7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5.1% 증가함.

[그림 11] 전체 근로자의 사업체규모별 기간평균(1~9월) 근로시간 추이

(단위: 시간)



주: 전체 근로자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한편 2014년 1~9월 평균 전체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모든 사업체 규모에서 감소함.
 - 5~299인 중소 규모 사업체에서 전체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1.0% 감소한 165.4시간,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는 전년동월대비 0.2% 감소한 168.4시간을 기록함.
 - 세부 규모별로 보면, 5~9인 사업체의 2014년 1~9월 평균 총 근로시간은 165.4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1.8%, 10~2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69.1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0.9%, 30~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4.2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0.8%, 100~2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5.7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0.6% 감소함.

(김복순,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

가계수지 동향

◇ 2014년 3/4분기 2인 이상 전국가구의 소득과 소비 증가

- 2014년 3/4분기 전국가구의 소득은 재산소득(6.7%), 근로소득(3.3%), 사업소득(1.2%), 이전소득(4.9%)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3.0% 증가함(실질로는 1.6% 증가).
 - 취업자 수 증가로 인해 근로소득, 임대소득 증가로 인해 사업소득, 7월부터 실시한 기초연금 영향으로 인해 이전소득(4.9%) 등이 증가한 데 기인함.
 - 전국가구의 경상소득은 3.0% 증가하였고, 비경상소득은 2.2% 증가하였음.
 - 소비지출은 전년동기대비 3.3% 증가하였음(실질로는 1.9% 증가).
 - 비소비지출의 경우, 경상조세(2.3%), 연금(5.2%), 사회보험(7.2%)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3.7% 증가하였으며, 이자비용 지출은 이자율 하락에 기인하여 3.8% 감소하였음.
 - 3/4분기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전년동기대비 2.8% 증가하였음.

〈표 11〉 2인 이상 전국가구의 분기별 가계수지 동향

(단위: 천 원, %, %p)

	2013		2014			
	3/4분기		2/4분기		3/4분기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소 득	4,259.9	2.9	4,152.2	2.8	4,387.6	3.0
경상소득	4,120.6	2.8	4,025.9	2.9	4,245.1	3.0
근로소득	2,866.5	3.3	2,761.5	4.1	2,961.3	3.3
사업소득	856.4	0.7	872.4	0.7	866.4	1.2
재산소득	17.9	-12.7	18.1	-10.8	19.1	6.7
이전소득	379.9	4.6	373.9	-0.1	398.4	4.9
비경상소득	139.3	4.8	126.3	-0.4	142.4	2.2
소비지출	2,493.5	1.1	2,477.7	3.1	2,576.3	3.3
비소비지출	807.7	2.0	771.6	2.4	837.6	3.7
처분가능소득	3,452.2	3.1	3,380.6	2.8	3,550.0	2.8
흑자액	958.7	8.6	902.9	2.2	973.7	1.6
흑자율	27.8	1.4	26.7	-0.2	27.4	-0.3
평균소비성향	72.2	-1.4	73.3	0.2	72.6	0.3

주: 1) 실질소득(소비)=(소득/201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100

2) 가처분소득=소득-비소비지출(조세, 사회보험료 등의 공적지출과 타가구 송금 등의 사적지출이 포함됨)

3) 흑자액=가처분소득-소비지출

4) 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가처분소득)×100

자료: 통계청(2013. 11), 『2013년 3/4분기 가계동향』.

- 2014년 3/4분기 소득은 모든 분위에서 전년동기대비 증가
 - 근로소득은 모든 분위에서 2.0~6.3%, 가처분소득도 1.0~8.3% 증가하였음.

〈표 12〉 2014년 3/4분기 소득 5분위별 소득 및 지출 현황

(단위: 천 원, %, %p)

	I 분위		II 분위		III 분위		IV 분위		V 분위	
	금액	증감률 (차)								
가구원 수	2.49명		3.11명		3.37명		3.49명		3.59명	
가구주 연령	59.0세		48.8세		46.7세		46.0세		47.8세	
소득	1,439.4	8.1	2,862.4	2.9	3,973.9	3.8	5,201.4	2.2	8,456.4	2.4
경상소득	1,364.9	8.7	2,797.2	2.9	3,905.1	3.8	5,124.3	2.8	8,029.9	2.0
근로소득	590.4	3.3	1,705.0	2.2	2,649.2	6.3	3,774.5	4.0	6,084.0	2.0
비경상소득	74.5	-0.9	65.2	-0.4	68.8	3.0	77.1	-25.9	426.5	10.9
가계지출	1,585.0	2.3	2,497.3	0.0	3,202.6	5.9	3,902.2	1.1	5,879.6	5.5
소비지출	1,288.1	1.2	2,015.8	-0.2	2,497.2	6.5	2,904.0	-0.8	4,174.6	7.1
비소비지출	296.8	7.5	481.5	0.6	705.3	4.0	998.2	7.4	1,705.0	1.9
처분가능소득	1,142.6	8.3	2,380.8	3.3	3,268.6	3.8	4,203.2	1.0	6,751.4	2.5
흑자액	-145.6	33.2	365.0	28.2	771.3	-4.1	1,299.3	5.5	2,576.7	-4.1
흑자율	-12.7	7.9	15.3	3.0	23.6	-1.9	30.9	1.3	38.2	-2.6
평균소비성향	112.7	-7.9	84.7	-3.0	76.4	1.9	69.1	-1.3	61.8	2.6

자료: 통계청(2013. 11), 『2013년 3/4분기 가계동향』.

(김복순,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 지난 11월 노동쟁의와 관련된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824건(이월사건 포함건수)
 - 지난 11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작년 동월건수(690건)보다 134건 높은 수치임.
- 지난 11월 조정성립률 53.8%
 - 지난 11월 조정성립률은 작년 동월 성립률 64.9%에 비해 11.1% 낮아진 수치임.
 - 조정사건 접수건수의 증가와 조정성립률의 저하를 통해 노사관계의 악화, 조정이 슈 복잡성의 증가 사실을 유추할 수 있음.

〈표 13〉 2013년, 2014년 11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철회	진행중	조정 성립률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2014. 11	824	773	346	144	202	297	37	260	45	85	51	53.8
2013. 11	690	655	365	227	138	197	65	132	31	62	35	64.9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복수노조사건**

- 지난 11월 복수노조사건 접수건수는 349건(이월사건 포함건수)
 - 지난 11월 복수노조사건 접수건수는 작년 동월(408건)보다 59건 낮은 수치임.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비율이 32.3%(103건), 기각·각하·취하비율이 67.7%(216건)를 차지함.

〈표 14〉 2013년, 2014년 11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내역							진행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14. 11	349	319	96	7	72	39	105	0	29
2013. 11	408	401	178	4	54	40	125	0	8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한국노총과 국민노총 통합**

- 지난달 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정연수 국민노총 위원장은 “두 조직의 통합을 선언한다”고 밝힘.
 -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권과 자본이 노동자와 노조를 우습게 보는 것은 노동계가 하나 되어 싸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한국노총과 국민노총의 통합은 노동계의 분열을 종식하고 1국 1노총 시대를 열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함.
 - 국민노총 위원장은 “낮은 노조 조직률이 노동운동의 투쟁력과 교섭력을 약화시키고 노동운동의 위기를 초래했다”며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단일노총·통일노총의 꿈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함.
 - 국민노총이 해산절차를 밟고, 소속 노조들이 3월까지 한국노총에 개별 가입하면, 한국노총 조합원은 약 83만 5천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 한 한국노총 관계자는 “통합의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국민노총 소속 조합원 모

두가 한국노총에 가입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통합에 참여하지 않은 지방공기업노조들과는 별도의 지방공기업연맹을 구성해 한국노총에 집단 가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함.

◆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

- 11월 20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여성노조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틀간 총파업에 돌입함.
 - 연대회의에 따르면 첫날 파업에 참가한 학교비정규직은 전국적으로 2만여 명이고, 경남·광주교육청 등 파업 돌입 직전 교섭을 타결한 2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총파업에 들어갔음.
 - 여성노조 위원장은 “학교는 평등을 배우고 꿈을 키워 가는 곳이어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학교비정규직 현실을 통해 차별을 배우며 자라고 있다”며 “노조 요구를 무시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을 끝내 총파업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함.
 - 여성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우리의 투쟁은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세상을 일구는 투쟁”이라며 “당당한 교육노동자로 인정받고 정규직과의 차별이 없어지는 날까지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선언함.
 -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상임대표는 “아이들에게 비정규직과 차별 없는 세상을 물려주기 위한 학교비정규직의 파업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전교조 위원장 또한 “차별에 저항하라고 가르쳐야 할 학교가 차별을 조장하는 모습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며 “학교비정규직과 전교조 조합원이 연대해 차별을 없애나가자고”고 밝힘.
 - 한편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연대회의 지도부는 파업 전날인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면담을 갖고 학교비정규직 총파업에 대해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함.
- 교육부는 “지난 19일 연대회의와 면담을 실시해 학교 급식 중단 등 혼란을 초래하는 총파업을 자제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음에도 총파업을 강행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학교 급식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학생들의 먹거리를 불모로 한 총파업은 당장 중지돼야 한다”고 밝힘.
 -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부족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정도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연대회의의 주장은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와 어려운 교육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요구”라고 말함.

- 이어 교육부는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회계직원 수는 계속 증가함에 따라 2011년부터 인건비로 매년 4,5천억 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등 부담이 증가되고 있다”며 “특히 시·도 교육감의 선거 공약 사항 이행을 위해 학교 회계직원의 자체 수당 신설과 증액, 인력 확충 등 방만한 운영에 따른 인건비 상승은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함.

◆ SK브로드밴드 · LG유플러스, 노사교섭 난항

- 11월 19일과 20일부터 시작된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 ·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 전면파업이 열흘을 넘어선 가운데, 지난달 1일부터 한국경총, SK브로드밴드 · LG유플러스 협력회사 등 회사 측 교섭단과 핵심 쟁점인 임금체계를 두고 집중교섭을 시작함.
 - 한국경총 등 회사 측 교섭단은 그간 교섭에서 업무량을 기준으로 기본급(120만 원)+실적급 임금체계를 제안하고, 지부 측은 1일 8시간 근무에 따른 기본급+시간외근로를 기본으로 하는 임금체계를 제시함.
 - LG유플러스지부 부지부장은 “서비스 기사의 이동거리나 업무에 걸리는 시간을 반영해야 현실적인 임금체계를 만들 수 있다”며 “현실성 없이 수리·설치 서비스 단가기준으로만 밀어붙이고, 임금체계 전환의 리스크를 노조에 떠넘기는 식이 되면 노조로서는 사측 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함.
 - SK브로드밴드지부 정책부장도 “교섭이 진전되지 않는 이유는 사측이 임금에 대해 전혀 양보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노조는 지난 교섭에서 임금요구안의 수준을 낮춘 만큼 사측도 이에 상응하는 수정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 한국경총 관계자는 “이번 집중교섭에서는 회사 측 수정안을 어떤 식으로든 제시할 것”이라면서 “다만 그간 건당수수료 형태로 지급돼 온 임금을 시간개념을 반영한 고정급으로 완전히 바꾸기는 어렵다”고 말함.
- 협력업체와 협력사협의회를 대리해 교섭에 나선 한국경총이 주요 쟁점에서 “결정권이 없다”며 노조 측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는 교섭결렬을 지난달 16일 선언하였음.
 -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또한 지난달 11일 비슷한 이유로 교섭을 중단함.
 - SK브로드밴드지부 관계자는 “지난 15일까지 경총과 집중교섭을 진행했지만 다만 계 하도급으로 인한 이중착취와 상시적 고용불안 해소, 성과급 위주 임금체계 개선 같은 쟁점에 대해 ‘하청업체들이 답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비판함.

- 노조는 △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업무 재하도급 금지 △고정급과 작업시간을 반영한 개통수당 책정 △노동시간단축 등을 요구하였으나, 경총은 고용승계 요구는 “결정권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고 재하도급 금지도 “불가피한 경우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또한 경총은 기본급 120만 원에 작업시간이 아닌 업무처리건수에 따라 1천 원에서 7천 원의 건당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주장에서 물러서지 않아 임금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음.
- 이에 지부 관계자는 “노동자의 업무량과 노동시간은 원청의 업무할당방식에 달렸고 협력업체의 유일한 수입은 원청이 지급하는 수수료”라며 “이중착취와 고용불안의 근원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원청이 비용 문제를 해결하고 원청-협력업체 간 위수탁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힘.

◆ **현대중공업, 지속되는 파업**

- 임금인상을 둘러싼 현대중공업 노사의 올해 임금·단체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현대중공업노조 조합원 5천500여 명(노조집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7시간 부분파업을 벌임.
 - 노조 관계자는 “파업집회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월차를 내고 퇴근했거나 출근하지 않은 조합원이 많아 공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함.
 - 현대중공업노조 위원장은 “추운 날씨에도 많은 조합원이 파업에 참석한 만큼 회사도 우리 조합원들의 의지를 인식하고 변화된 태도를 보일 것”이라며 “조합원 모두 하나로 힘을 합쳐 반드시 승리하자”고 호소함.
 - 지금까지 나온 회사 측 최종안은 △기본급 3만 7천 원(호봉승급분 2만 3천 원 포함) 인상 △격려금 100%(회사 주식으로 지급)+300만 원 지급 등임.
 - 반면 노조는 △임금 13만 2천13원(기본급 대비 6.51%) 인상 △호봉승급분 2만 3천 원을 5만 원으로 인상 △성과금 250%+a 지급을 요구하고 있음.
 - 노조는 울산지역 주요 기업 임금인상률과 물가수준을 고려할 때 호봉승급분을 합쳐 3만 7천 원을 올려 주겠다는 회사 측 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만약 노사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20년 만에 벌어진 현대중공업노조의 쟁의행위가 계속될 가능성도 존재함.

◆ **정년 60세 의무화, 대기업 75% “임금체계 개편”**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정년 60세와 노동시장 변화’에 대해 조

사한 결과, 300인 이상 대기업 10곳 중 7곳은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를 앞두고 임금피크제 도입 같은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남.

-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의 75.7%는 2016년 60세 정년 의무화가 시행되면 임금피크제 도입이나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며, 32%(복수응답)가 임금체계 전면 개편을, 23.2%가 기존 정년 이후 임금피크제 도입을, 20.5%가 현행 임금피크제를 60세로 연장하겠다고 응답함.
- 하지만 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의 취업규칙상 정년은 평균 58.2세였으나, “대부분의 근로자가 정년까지 일한다”고 답한 기업은 절반이 조금 넘는 59.1%에 그쳐 정년 60세 의무화가 시행되더라도 제대로 정착될지 의문이 제기됨.
- 기업들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임금피크제 의무화 법안 입법(28.2%) △재정 지원 강화(27.6%) △노조 및 근로자의 협조(25.4%) △임금피크제 도입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보지 않을 것(17.1%)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노동·시민단체, “인종주의” 비판

○ 민주노총·서울경인이주노조 등 40여 개 노동·시민단체가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미국의 인종차별적 경찰폭력 규탄 국제 연대행동’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과 한국의 인종주의에 대해 비판함.

-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한국에서도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외면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주노동자를 범죄인시하며 불법·폭력적으로 단속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국가폭력에 대해 절대 가만히 있지 말고 단결하고 싸워야 한다”고 말함.
- 서울경인이주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주노조 활동을 하는 이주노동자를 추방시키는 반면 범죄를 저지른 선진국 사람은 입국이 허가되는 곳이 한국”이라며 “명백한 인종차별인 만큼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고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힘.
- 노동·시민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국은 미국의 군사화와 인종주의를 지난 60년간 학습했다”며 “한국 이주노동자는 매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급습과 차별적인 법·제도, 일상적 모욕을 견디고 있다”고 강조하고, “미국의 경찰폭력 반대 운동에 연대를 표하고, 한국에서의 군사화·인종주의에 맞서 싸우겠다”고 선언함.

◆ 철도노조 파업, 전원 무죄선고

○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2일 지난해 말 사상 최장기간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

방해)로 기소된 전국철도노조 전 위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간부 3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함.

- 파업 당시 노조 집행부의 핵심 간부를 지낸 이들 4명은 지난해 12월 9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정부와 철도공사 측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며 최장기간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됨.
- 재판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2013년 철도파업의 목적은 한국철도공사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 위법”이라며 “철도파업으로 사회적 혼란 및 국가경제적 손실이 발생했고 국민들에게 심각한 불편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판시함.
- 하지만 재판부는 목적 자체가 위법이라고 하더라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1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후 사정과 경위에 비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손해가 초래됐을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결론을 내림)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파업은 업무방해죄 요건인 ‘전격성’을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함.
- 재판부는 “철도노조원들 및 철도공사 직원들의 진술, 언론 보도 내용, 철도노조가 파업 전 필수유지 업무명단을 통보하고 철도공사는 이에 대하여 비상수송대책 등을 강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철도사업장의 특성상 대체인력투입에 한계가 있고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필수공익사업장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이어서 재판부는 “단순한 근로제공 거부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강제노역을 부과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2조 1항의 강제노역을 금지한 헌법에 반할 우려가 있는 점, 현재 정당성이 없는 단순한 근로제공 거부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국가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어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단순한 근로제공의 거부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제한적·한정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함.

◆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 주말휴일 없어질까 우려

-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는 이마트·홈플러스 등이 서울 동대문구청장과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대규모 점포와 입점해 있는 임대 매장은 대형마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여, 1심에서 원고 패소한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함.

- 2012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장면적 합계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는 대형마트로 분류되며, 해당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10시까지 제한하고, 매일 이들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음.
- 판결 이후, 이마트노조 위원장은 “40만 명의 마트 노동자들이 의무휴업일로 주말 하루 동안 휴식권을 보장받았는데 법원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사용자와 소비자의 입장만 고려했다”며 “법원 판결로 의무휴업일이 폐지돼 주말 하루 동안 다른 사람들처럼 쉴 수 있었던 대형마트 노동자의 휴식권이 뺏길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함.
- 서비스연맹은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비판함. **KLI**

(정재우, 동향분석팀 연구원)